

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[별표 6의3] <개정 2021. 4. 8.>

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 (제93조의10 관련)

1. 면허기준 대수

사업구역의 규모 구분	운송가맹점 자동차 확보기준
가. 특별시·광역시인 사업구역	해당 사업구역 내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총 자동차 대수의 1% 이상 이거나 5백대 이상
나. 인구 50만 이상의 사업구역	해당 사업구역 내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총 자동차 대수의 1.5% 이상
다. 인구 50만 미만의 사업구역	해당 사업구역 내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총 자동차 대수의 2% 이상

비고

플랫폼가맹사업이 2개 이상의 사업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최소 1대 이상 자동차를 확보하고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자동차 전체 대수가 각 사업구역별 확보기준을 합산한 대수 이상이면 운송가맹점 자동차 확보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

2. 운송플랫폼 기준

별표 6의2 제4호에 따른 운송플랫폼과 사무공간 및 상주인력을 갖출 것